

현장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상적인 교섭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4.9.(목) 중앙일보, “포스코 최소 4개 노조와 교섭해야... ‘아메바 분쟁’ 신호탄”
“민간 포스코도 하청노조들과 따로 교섭한다”
서울경제, “‘포스코 하청노조 분리교섭 허용’ 勞에 기운 노봉법”
“상급단체별 나누고 업무별 갈라...대기업 ‘3중 교섭’ 기본되나”
파이낸셜뉴스, “985개 하청 교섭 요구, 노봉법 한달 만의 혼란”
“한달간 하청 985곳 교섭요구...車반도체 등 압박 거세진다”
한국경제, “대기업, 무제한 ‘쪼개기 교섭’ 우려... 산업 현장 혼란”
“민노총 따로 한노총 따로 하청노조 ‘쪼개기 교섭’ 허용”
동아일보, “하청노조 많은 기업 ‘쪼개기 교섭’ 우려가 현실로... 노사 갈등 더 커질수도”
““여러 하청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쪼개기 현실화” 등

2. 설명 내용

<현장은 대화보다 분쟁의 국면으로 빨리 들어가고 있으며, 대다수 사안이 노동위원회로 향하고 있다는 주장 관련>

-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 초기에 사용자성 여부 등에 대한 축적된 사례가 많지 않음에 따라 현장에서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아 교섭을 진행하는 법적 절차를 따르려는 것으로,
 - 이는 시행 초기 노동조합법 절차에 따른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분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없음
 -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확인받은 원청 대부분은 결정 직후 곧바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 (4.2. 충남지노위 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총 4개사 모두 교섭요구 사실 공고
- (4.6. 경북지노위 결정) 한국산업단지공단 교섭요구 사실 공고

○ 아울러, 교섭단위 분리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교섭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 시행 초기 짧은 기간 동안의 교섭체계 형성 과정을 현장의 혼란으로 오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시행 초기에 법적 절차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 및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통해 현장의 교섭질서가 형성되어 안정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기업이 무제한 쪼개기 교섭을 해야 하여 개별교섭으로 간다거나 1년 내내 교섭을 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하여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원·하청 교섭의 경우, 기존의 계약사용자와의 교섭과는 달리 노조 간 소속된 기업이 달라 이해관계, 직무, 노조의 특성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임

□ 금번 포스코 결정의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와 같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규정을 토대로, 업무 성격, 그간의 교섭 관행 및 이에 따른 노조 간 갈등 가능성, 이익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효율적 교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측면에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한 것으로,

○ 단순히 노동조합이 다르다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 것이 아님

○ 아울러, 포스코의 경우 사내하청 업체만 하더라도 최소 50개사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이번 경북지노위 결정은 전체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총 3개의 교섭 단위로 분리하는 것으로, 개별교섭과 같이 하청업체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노사관계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단위로 분리되는 것임
- 따라서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일 년 내내 교섭하게 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임

| | | | | |
|-------|--------------------------|-----|-----|--------------------|
| 담당 부서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 책임자 | 과 장 | 강승헌 (044-202-7611) |
| | | 담당자 | 서기관 | 정장석 (044-202-7615) |
| |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 | 책임자 | 과 장 | 김범석 (044-202-8231) |
| | | 담당자 | 사무관 | 박재형 (044-202-8242) |

